

서울특별시마포구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5. 3. 4.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5년 2월 21일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2005년 2월 21일
- 다. 상정일자 : 제110회 임시회 제2차위원회 (2005. 3. 4)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기획예산과장 정 상 택

가. 제안이유

○ 행정능률향상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보건소장에게 위임한 사무중 약사법으로 관리되던 의료용구가 의료기기법(2003.5.29. 법률 제6909호)의 제정으로 2004년 5월 30일부터 동법에 의하여 시행됨에 따라 사무 위임조례중 현행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의료기기판매업 및 임대업 등에 관한 규정의 근거법령을 약사법에서 의료 기기법으로 변경함(제5조 관련 별표 위임사무중 보건소 사무명 제12호)

주 관 국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 입 기 관
보건소	12. 의료기기판매업 및 임대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보건소장
	가. 신고, 신고사항 변경 및 폐업 등의 신고	0 의료기기법 제16조	
	나. 보고와 검사 등	0 동법제28조	
	다. 폐기명령 등	0 동법제30조	
	라. 사용중지명령 등	0 동법제31조	
	마. 허가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0 동법제32조	
	바. 과징금 부과 및 징수	0 동법제33조	
	사. 청문	0 동법제34조	
	아. 의료기기 감시원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	0 동법제35조	
	자. 허가, 신고 등의 갱신	0 동법제41조	
	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0 동법제4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박 관 수)

○ 동 개정 조례안은 환자치료와 진단에 이용되는 약품이외의 모든 의료기기의 제조·수입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의료기기법이 2003. 5. 29일 법률 제7128호로 제정 공포되고 1년후인 2004. 5.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사무위임조례 중 그 동안 약사법에 근거하여 규정하였던 보건소 사무중 의료용구판매업에 관한 사무를 의료기기법의 관련규정과 일치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제5조 관련 별표의 규정 중 보건소장에게 위임된 안 제12호의 내용은 종전에는 약사법에 근거하여 규정하였던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사무 위임된 의료용구판매업에 관한 사무를 동 개정안에서는 의료기기법에 규정된 의료기기판매업 및 임대업에 관한 사무로 보건소장에게 사무위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는 사료되나, 의료기기법 및 의료기기법시행령의 시행일이 2004. 5. 30일인 점을 감안하면 위임 사무를 규정한 동 조례안의 개정 시기는 다소 늦었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유남열 위원) : 의료기기법이 2004년 5월에 시행되었는데 조례 개정이 늦은 이유는?

○ 답변요지(정상택 기획예산과장) : 착수시기가 늦었음.

○ 질의요지(유남열 위원) : 우리구에 의료기기 판매업체 수는?

○ 답변요지(정상택 기획예산과장) : 총 322개소가 있음.

○ 질의요지(오윤수 위원) : 약사법에 규정하였던 구청장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의료기기법에 규정된 사항만 보건소장에게 사무 위임하는 것인가?

○ 답변요지(정상택 기획예산과장) : 예. 그렇습니다.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마포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05. 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행정능률향상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보건소장에게 위임한 사무중 약사법으로 관리되던 의료용구가 의료기기법(2003.5.29, 법률 제6909호)의 제정으로 2004년 5월 30일부터 동법에 의하여 시행됨에 따라 사무위임조례중 현행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2. 주요 개정골자

의료기기판매업 및 임대업 등에 관한 규정의 근거법령을 약사법에서 의료기기법으로 변경함(제5조 관련 별표 위임사무중 보건소 사무명 제12호)

주관국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보건소	12. 의료기기판매업 및 임대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신고, 신고사항 변경 및 폐업 등의 신고 나. 보고와 검사 등 다. 폐기명령 등 라. 사용중지명령 등 마. 허가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바.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사. 청문 아. 의료기기 감시원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 자. 허가, 신고 등의 갱신 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의료기기법 제16조 ○ 동법제28조 ○ 동법제30조 ○ 동법제31조 ○ 동법제32조 ○ 동법제33조 ○ 동법제34조 ○ 동법제35조 ○ 동법제41조 ○ 동법제47조	보건소장

3. 개정근거

- (1) 지방자치법(2004.1.29, 법률제7128호) 제95조제1항
- (2) 의료기기법(2003.5.29, 법률제6909호) 제16조, 제28조, 제30조
내지 제35조, 제41조, 제47조

4. 조례(안) : 따로붙임

5.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6. 기타사항

- 가. 입법예고 : 2004. 12 .15 ~ 2005. 1. 4 (특이사항 없음)
- 나.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의결(2005.2.18)
- 다.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관련 별표 위임사무중 보건소란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주관국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보건소	12. 의료기기판매업 및 임대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신고, 신고사항 변경 및 폐업 등의 신고 나. 보고와 검사 등 다. 폐기명령 등 라. 사용중지명령 등 마.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바.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사. 청문 아. 의료기기 감시원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 자. 허가, 신고 등의 갱신 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의료기기법 제16조 ○동법제28조 ○동법제30조 ○동법제31조 ○동법제32조 ○동법제33조 ○동법제34조 ○동법제35조 ○동법제41조 ○동법제47조	보건소장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의료용구 판매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별표]

위 입 사 무

현행				개정안			
주관국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주관국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1. ~ 11. (생략)				1. ~ 11. (현행과 같음)		
보건소	12. 의료용구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보건소장	보건소	12. 의료기기판매업 및 임대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보건소장
	가. 신고 및 신고된 사항 변경등록	○약사법 42조 ○동법시행규칙 제59조및제60 조			가. 신고, 신고사항 변경 및 폐업 등의 신고	• 의료기기법 제16조	
	나. 보고와 검사등	○동법 제64조			나. 보고와 검사 등	• 동법 제28조	
	다. 폐기명령등	○동법 제65조			다. 폐기명령 등	• 동법 제30조	
	라. 개수명령	○동법 제67조			라. 사용중지명령 등	• 동법 제31조	
	마. 신고중의 재고부	○동법시행규칙 제93조			마.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 동법 제32조	
	바. 신고취소와 영업정지등 그에 따른 청문	○동법제69조 및제69조의2			바. 과징금 부과 및 징수	• 동법 제33조	
	사. 과태료부과 및 징수, 그에 따른 이의제기 처리	○동법제79조 ○동법시행규칙 제31조 ○동법시행규칙 제91조			사. 청문	• 동법 제34조	
					아. 의료기기 감시원의 임명 및 직무별위 등	• 동법 제35조	
					자. 허가, 신고 등의 갱신	• 동법 제41조	
					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동법 제47조	
	13.~14. (생략)				13.~14. (현행과 같음)		